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8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소병훈·안태준·박희승

정성호 • 안호영 • 문정복

용혜인 • 박지원 • 정춘생

김교흥ㆍ허 영ㆍ정준호

이워택 • 서영석 • 이수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취업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 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면접시험의 공정성 유지 등) ① 구인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면접시험 중에 구직자에게 제4조의 3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면접시험 중 구직자에게 제4조의3 각호의 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한 구인자 또는 심사위원
- 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 구인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접시험 심사위원단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제1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 제 3조의2(면접시험의 공정성 유지 등) ① 구인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인은 면접시험 중에 구직자에게 제4조의3 각 호의 정보에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거나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아되었다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②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 |

| 3 | 다음 | 각 | 호의 | 어느 | 하니 | 에 |
|--------------|----|-------------|------|-----|----|----|
| 해당 | 하는 | 자 | 에게는 | 300 | 만원 | 0] |
| 하의 | 과티 | H료 | 를 부: | 과한다 | | |
| 1. ~ | 3. | (생 | 략) | | | |
| <u><신</u> | 설〉 | <u>></u> | | | | |

④ (생 략)

| 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
|-----------------------|
| 한 구인자 또는 심사위원 |
| ③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 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
| 면접시험을 실시한 구인자 |
| ④ (현행과 같음) |